



나 제대로 알고 있나?

○ 나의 성 인식 민감도는?

나의 YES는 몇 개?

- 01** ·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언동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 02** · 나의 제안에 상대방이 침묵했다는 것은 나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 03** ·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언사는 개인의 신념일 뿐, 성차별과는 무관하다.
- 04** · 나의 성적 제의에 상대방이 ‘싫다’라고 말할 때, 속으로는 좋으면서 퉁긴다고 생각한다.
- 05** · 혼자 있는 내 방에 상대방이 흔쾌히 들어왔다면 성적 관계를 허락한 것이므로 성적 행동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 06** · 친밀한 사이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가벼운 스킨십은 가능하다.
- 07** · 둘이서 함께 찍은 가벼운 스킨십 사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 블로그에 올려도 된다.
- 08** ·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09** ·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의 외모나 몸매를 화제로 삼는 것은 나의 자유다.
- 10** · 성적 농담은 설령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친밀감 조성과 팀워크 면에서 보면 괜찮다.



- 0개 : 멋진 당신이네요.
 1개~3개 : 분발하세요.
 4개~6개 : 의식개선이 필요합니다.
 7개 이상 : 위험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을 높이세요!



카이스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카이스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시스템
 (humanrights.kaist.ac.kr)에서
 인권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동영상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인권윤리센터는 KAIST 전체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업, 업무, 연구 윤리를 함양하기 위한 기구로서, 인권/고충, 성희롱/성폭력, 부패/윤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인권 및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 온라인/오프라인 예방교육
- 사건의 접수, 상담, 처리 등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2016. 2. 17

KAIST

카이스트인권윤리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교육지원동(W8) 1층 1115호실
 TEL: 042-350-1004 | EMAIL: humanrights@kaist.ac.kr

성폭력 예방가이드

Prevention Guide for Sexual Violence



KAIST 인권윤리센터

성폭력의 유형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性的)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개인에 관한 성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술 따르기나 춤추기를 강요하는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적 행동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매체로 전송하는 경우도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성폭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가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수반되지 않아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
-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행위

친밀감 표현과 성희롱?

- ✓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성적 언동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무시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 ✓ 단체생활에서의 성적 언행의 수용 여부가 학업, 업무, 고용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성희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STOP

상대방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성희롱의 여부는 ‘동의’의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언어적 몸짓이나 침묵 등을 ‘동의’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라는 의사가 명확한 언어 표현으로 전달되었을 때만 진정한 ‘동의’가 성립됩니다

동의의 기준

1. 동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된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선배나 교수 등의 우월적 지위나 강압을 통해 얻어낸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닙니다.
2. 심신미약 등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의 ‘예’는 진정한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관점

어떤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

일반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였을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성적언동 유무, 발생빈도,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희롱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

성희롱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 성희롱이라고 느껴지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장난을 넘어선 성희롱이라고 느껴지거나 불쾌한 성적 접촉 등 피해를 받는 경우, 단호하고 정중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합니다.
- 항의를 받은 사람은 즉시 그 행동을 시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상대방의 ‘No’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언동을 즉시 중단하고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학교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다음의 절차로 해결합니다.

인권윤리센터에 사건 접수
(방문, 전화, 이메일)

고충 청취 및 처리 절차 안내

종재

공식사건처리

사실확인

사건조사

당사자간
합의 · 종재

성폭력 심의 위원회
(심의 · 징계 판정)

필요시 관련 징계위원회
(심의 · 징계 판정)